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건 2023고단524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사 양성필(기소), 김동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전재욱

판결선고 2023.8.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6.경부터 2022. 7. 31.경까지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철원군 C읍 사무소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경 피해자 철원군청에서 인구감소의 주된 요인인 인구이동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제정된 조례에 따라, 전입 세대에 정착을 위한 지원금인 10만 원 상당의 철원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상품권을 보관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경부터 2017. 6. 30.경까지 C읍사무소에서, 자신의 책상 서랍에 보관하고 있던 합계 650,000원 상당의 철원사랑상품권 13장을 임의로 가져가 자신의 차량 주유 및 마트 등

에서 생필품을 구입하면서 이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 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5,300,000원의 철원사랑상품권 506장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제1, 2회)
- 1. 감사결과, 연도별 지급내역 총괄표
- 1.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민원부서 업무분장 및 사무분장
- 1. C 전입지원금 수불부 허위작성내역, C 전입지원금 즉시지급허위작성 내역
- 1. 수사보고서(피의자 근무 자리 및 보관 장소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5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횡령금액 및 범행기간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기소 이후 피고인이 피해금액 전액을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여규호

별 지

별지

범죄일람표					
구분 연번	범죄일시	피해자	피해금액(원)	수법	비고
1	2017. 06. 01. ~ 2017. 06. 30.	철원군청	650,000		철원사랑상품권(5만원권) 13매
2	2017. 07. 01. ~ 2017. 07. 31.	철원군청	200,000		철원사랑상품권(5만원권) 4매
3	2017. 08. 01. ~ 2017. 08. 31.	철원군청	100,000		결원사랑상품권(5만원권) 2매
4	2017. 12. 01. ~ 2017. 12. 31.	철원군청	200,000		철원사랑상품권(5만원권) 4매
5	2018. 01. 01. ~ 2018. 01. 31.	철원군청	300,000	<u> </u>	철원사랑상품권(5만원권) 6매
6	2018. 02. 01. ~ 2018. 02. 28.	철원군청	200,000		철원사랑상품권(5만원권) 4매
7	2018. 03. 01. ~ 2018. 03. 31.	철원군청	100,000	1	철원사랑상품권(5만원권) 2매
8	2018. 05. 01. ~ 2018. 05. 31.	철원군청	200,000		철원사랑상품권(5만원권) 4매
9	2018. 08. 01. ~ 2018. 08. 31.	철원군청	700,000		철원사랑상품권(5만원권) 14메
10	2018. 09. 01. ~ 2018. 09. 30.	철원군청	900,000		철원사랑상품권(5만원권) 18배
11	2018. 10. 01. ~ 2018. 10. 31.	철원군청	1,450,000		철원사랑상품권(5만원권) 29매
12	2018. 11. 01. ~ 2018. 11. 30.	철원군청	100,000		철원사랑상품권(5만원권) 2배
13	2018. 12. 01. ~ 2018. 12. 31.	철원군청	1,100,000	1	철원사랑상품권(5만원권) 22째
14	2019. 05. 01. ~ 2019. 05. 31.	철원군청	600,000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철원사랑상품권	철원사랑상품권(5만원권) 12매
15	2019. 06. 01. ~ 2019. 06. 30.	철원군청	1,400,000	을 임의로 가져가 주유 및 생필품을 구	칠원사랑상품권(5만원권) 28때
16	2019. 07. 01. ~ 2019. 07. 31.	칠원군청	1,200,000	임하면서 임의 소비	철원사랑상품권(5만원권) 24매
17	2019. 08. 01. ~ 2019. 08. 31.	철원군청	1,800,000		철원사랑상품권(5만원권) 36폐
18	2019. 09. 01. ~ 2019. 09. 30.	철원군청	1,400,000		철원사랑상품권(5만원권) 28매
19	2019. 10. 01. ~ 2019. 10. 31.	결원군정	1,800,000		철원사랑상품권(5만원권) 36매
20	2019. 11. 01. ~ 2019. 11. 30.	철원군청	2,100,000		철원사랑상품권(5만원권) 42매
	2019. 12. 01. ~ 2019. 12. 31.	철원군청	1,600,000		철원사랑상품권(5만원권) 32매
1-177	2020, 01, 01, ~ 2020, 01, 31.	철원군청	1,800,000		철원사랑상품권(5만원권) 36때
	2020, 02, 01, ~ 2020, 02, 29,	철원군청	1,200,000		철원사랑상품권(5만원권) 24매
	2020, 93, 01, ~ 2020, 03, 31.	철원군청	1,200,000		결원사랑상품권(5만원권) 24매
	2020. 04. 01. ~ 2020. 04. 30.	철원군청	400,000		철원사랑상품권(5만원권) B매
-	2020. 05. 01. ~ 2020. 05. 31.	칠원군청	400,000		칠원사랑상품권(5만원권) 8메
	2020. 07. 01. ~ 2020. 07. 31.	칠원군청	500,000		철원사랑상품권(5만원권) 10메
	2020. 08. 01 ~ 2020. 08. 31.	철원군청	400,000		철원사랑상품권(5만원권) 8메
29	2020. 09, 01. ~ 2020. 09. 30.	철원군청	1,300,000		철원사랑상품권(5만원권) 26배

끝.